

생산일 : 2003. 8. 21

報 道 資 料

이 資料는 2003년 8월 22일 朝刊부터
報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「소비자안전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」 관련 공청회 개최 主要內容

□ 재정경제부는 금년도 소비자보호시책의 중점과제인 「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」에 관하여 8. 28.(목) 15:00 한국소비자보호원(13층)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

-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자인 중앙대 법대 이종영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
- 국무조정실, 재정경제부, 산업자원부, 건설교통부, 한국소비자보호원,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,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

□ 연구자는 소비자안전강화를 위해 (가칭)「소비자안전법」 제정(안) 및 (가칭)「소비자안전센터」의 설치, 위해정보 수집 및 소비자 경보발령 등 제도 보완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

※ 위해정보 제도 : 소비자가 상품·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·상해 사례 등을 수집하여, 원인분석후 사고 재발 방지 조치(예 : 소비자 경보발령, 리콜, 제도개선 등)를 시행

□ 앞으로 우리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소비자안전 인프라 구축 방안을 확정할 방침

첨 부 : 1. 소비자안전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1부
2. 외국 제도 등 관련 참고 자료 1부
3. 소비자안전 강화시책 추진경과 1부. 끝.

報道資料 生産課 : 소비자정책과 과장 신윤수, 사무관 김형원

TEL(直)503-9060~1 (交)2110-2066~8

財政經濟部 公報官

(첨부 1)

소비자안전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

(공청회 자료 요약)

1. 추진 배경

- 소비자안전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(제10조)에 기초
 -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물품·용역의 출현(예: 산후조리원, 번지점프, 찜질방, 힐리스, 어린이 놀이시설, PC방 등)등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안전 관련 법령·안전기준 및 조직 등 인프라 구축 필요
-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권리 중 최우선적·기본적 권리
(소비자보호법 제3조의 8대 소비자권리 중 첫번째 권리)

2. 현황 및 문제점

-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기본법(안전, 피해구제, 거래의 공정성 등을 포괄)으로서 소비자안전 관련 규정이 불충분하므로, 생명·신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체제·형식의 입법 필요(안전의 법익 우월성)
 - 미국 : 소비자제품안전법(1972), 일본 : 소비생활용품안전법(1973)
- 안전 부문 예산 확대, 위해정보 보고기관 지원, 교육 강화, 위해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
 - 위해정보는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, 리콜을 위한 기본 자료임에도 수집량이 연간 3·4천건에 불과한 실정
 - 미국은 전국전자위해감시시스템 (NEISS)를 통해 연간 40만건 수집
- 우선적으로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하고,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·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불가피

3. 제도 개선 방향

□ 소비자안전법 제정

- 소비자안전의 목적과 대상(위해 물품·용역·시설물로부터의 소비자의 생명·신체·재산 보호)
- 국가의 소비자안전 계획 수립(국가에 대해 산업기술과 경제동향에 부응하는 소비자 안전계획 수립 의무 부과)
- 소비자안전심의회의 구성(물품·용역·시설물에 관한 전반적 소비자안전정책을 심의하는 협의체 기관)
- 중앙행정기관장의 출입권·정보제공요구권,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
- 소비자안전센터 및 소비자 위해경보의 명문화(안전전담 기구 및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안전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)
- 기준·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(재정부 장관의 안전대책 수립 및 관련 부처·기관에 대한 의견제시)
- 소비자안전 교육제도, 안전표시제도 등을 명문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
- 우수소비자안전업소 지정제도, 자발적 안전인증제도, 내부 고발자 포상, 소비자안전기금 등을 도입
- 소비자안전에 관한 개별 법령·소비자보호법과의 관계를 규정(개별법령, 소비자안전법, 소비자보호법 순으로 적용)

□ 소비자안전 전담 기구의 보완·개편(소비자안전센터 활용)

- 현재 소비자보호원(소비자안전국·시험검사소)이 위해정보 평가 등 소비자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, 업무수행에 한계(위해정보 수집량 부족, 인력·예산부족 등)
 - 안전기구의 전문성 확보 및 위해정보 수집 확대를 바탕으로 신속한 평가와 공표가 가능한 별도 조직 설치 검토 필요
 - 소비자안전법 등에 조직·역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기구의 위상·권한 부여, 관련 부처간 협조·참여 등 연계 장치를 마련하여 사고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실시
- 소비자안전 정보 제공 시스템 확충 및 안전기준 제·개정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(정책건의) 근거 마련

□ 위해정보 관리체계의 개선

- 중앙행정 기관(또는 안전센터)에서 수집한 위해정보를 공유하고 보고기관 전담직원의 인건비 지원 및 교육 실시
- 장기적으로는 병원 진료기록 중 인적 사항 등 개인신상정보 등을 제외한 사항이 자동 입력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

□ 안전 기준 설정 원칙 마련 및 안전 문화 유도

- 일률적 안전기준(성인남자 기준) 보다는 부처/기관간 협력·시민참여를 통해 유아, 노인 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마련
 - 소비행동의 특성에 대한 연구, 사고유형 조사연구 등 정책적 연구활동 지원이 필요
- 소비자 위해경고심볼, 사용설명, 주의표시 위반시 처벌 강화 및 교육 홍보 활동 강화 추진

(첨부 2)

외국 제도 등 관련 참고 자료

□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안전법과의 관계

- 제조물책임법('02.7 시행)은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후적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 특별법임에 반하여
- 소비자안전법은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 설정, 위해 정보수집·소비자경보발령 등을 통한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, 국가의 안전의무 규정 등 사전적 예방을 위한 행정법규임
- 또한,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에 한정된 것이나 소비자안전법은 물품/용역/시설물 등 소비생활에 제공된 제반 위험요소를 대상

□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외국의 제도

- 미국, 일본은 별도의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을 운영 중이며, 특히 미국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(CPSC: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)를 설치하여 종합적 소비자안전 관리 업무 수행
 - 미국 : 소비자제품안전법(1972), 일본 : 소비생활용품안전법(1973)
-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법률상 별도 기구(National Injury Information Clearinghouse : 소비자안전센터에 해당)에서 위해 정보 수집·조사·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
 - 리콜 실시, 소비자 경보발령, 안전기준 개선 등에 활용
 - ※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예산 5,663만불(약 700억원), 인원 : 480명
 - ※ 전국전자위해감시시스템 (NEISS: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) 운영 : 연간 40만건 위해정보 수집
- 캐나다, 영국, 호주, 유럽연합에서도 위해정보수집망 운용

(첨부 3)

소비자안전 강화시책 추진 경과

1. 정책 추진 과정

- 소비자안전 강화 시책은 '03년 경제운용계획(1.8)에 포함, 금년도 '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('03.3.)'에서 올해의 주요정책 과제로 의결

2. 추진 경과

-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「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」(위원장: 재경부 국민생활국장)를 구성하여 부처간 협력 체제 구축
 - 소비자안전강화 방안, 어린이용품 주의·경고 표시 방안, 분야별 소비자안전 강화 추진 계획(안),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논의(5.13, 7.3)
- 위해정보 보고기관(기존 175개)을 병원·소방서(총 57개)로 소수 정예화하고, 위해정보평가위원회(소보원)를 전문가·실무자 중심의 분과별 운영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전문성을 제고(6.24)
- 위해정보 보고요령 등 소비자안전 교육 실시(6.20, 7.16)
- 제2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정책 추진과정을 보고(7.25)

3. 추진 계획

- 안전전문위를 분기별 및 수시개최하여 부처·기관간 협력을 강화
 - 소비자안전기구 설치방안,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등 심층적 논의
- 위해정보 보고기관에 대해 경비 지원, 담당자 교육, 사망정보 수집 등으로 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(조속한 시일내 시행)
-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여론 수렴후 (가칭)소비자안전법(안) 입법 및 소비자안전센터 설치 추진 예정

